



유효기간 1년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 항목

- ☐ 과세가격(삭제)
- ☐ 품목분류
- ☐ 외환거래
- ☐ 수입요건



구매자(화주)



구매대행 업자

연대납세의무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0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종 전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 이하

달라지는 내용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수출가격 500만원(FOB 기준) 이하

간이수출 신고기준



400만 원



500만 원



효과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시간·비용 절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사례 〉

개정전	· S사의 K-팝 한정판 프리미엄 굿즈 수출가격은 450만원 상당으로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대신 일반수출신고를 하게 되어 S사의 수출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됨
개정후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S사 상품 해외 판매 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 관련 업무량 감소 및 비용 절감

기대효과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고가·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신고 수수료 절감

시행일 '26. 6. 26. 시행 예정(「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3조 개정)

0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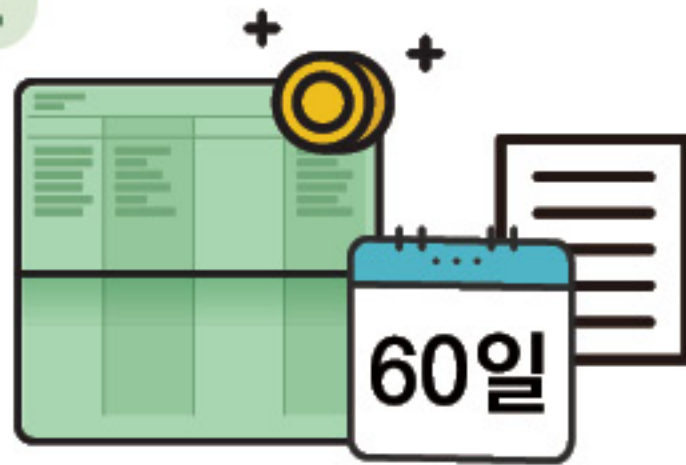
종 전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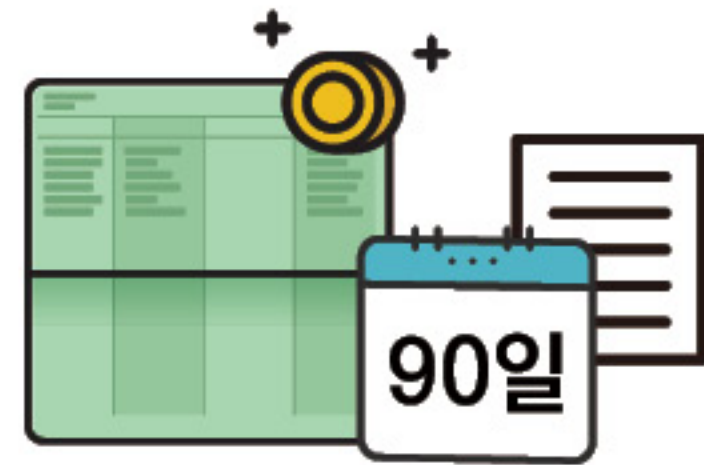
달라지는 내용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

기존



개선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 사례 >

개정전	· 풀필먼트 방식으로 수출 판매하는 A사의 물품은 다양한 거래조건*으로 판매되어 회계처리에 장기간 소요됨. A사가 판매대금 확정일·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확정가격을 신고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품대금 지급 시 할인율 적용 및 누적 적립금 사용
개정후	· 풀필먼트 수출 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판매금액 확정일·입금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되어 A사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 실제 공급한 수출가격 신고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

기대효과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전 예방

시행일 '26. 6. 26. 시행 예정(「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2조 개정)

03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

종 전

- 혼용작업 신청기한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
-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달라지는 내용

-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 혼용작업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
-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



< 사례 >

개정전	· 외국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보세공장 M사는 혼용승인·원료과세 사전신청을 누락하여 추가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정후	·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으로 확대됨으로써 단순 사전승인 누락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M사의 조세부담 완화

기대효과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식의 과세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시행일 '26. 1. 1. 시행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관세법」제188조, 제189조 개정)

0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종 전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감면 사유 확대
 - [현행과 같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 신고(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신설



< 사례 >

개정전	· 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 품목으로 사전심사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함
개정후	· 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로 사전심사 결정되어도 부족세액을 2개월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함

기대효과 납세자 편의 증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로 HS불확실성 해소 등

시행일 '26. 1. 1.시행(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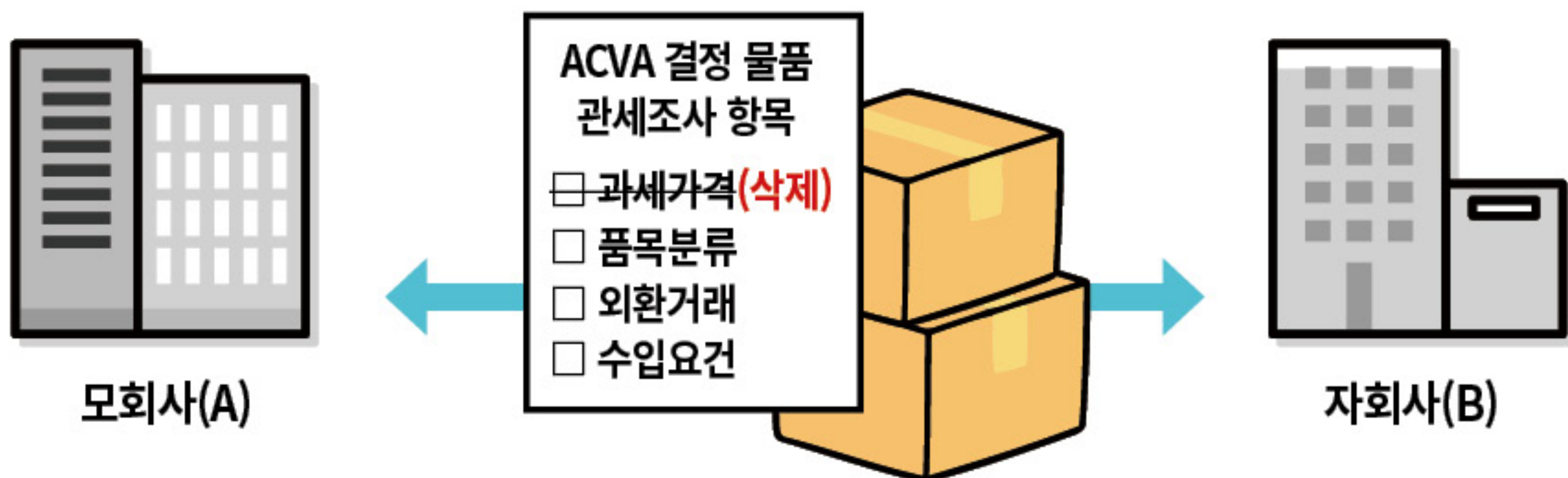
05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과세가격 분야) 제외

종 전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 가능
 -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의 변경 여부
 - 중요한 부분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여부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

달라지는 내용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
 - 과세가격 이외 분야(품목분류, 외환거래, 수입요건 등) 가능



< 사례 >

개정전	·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조사 시 이미 과세가격 결정을 받은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가능
개정후	·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조사 시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는 관세조사 할 수 없음

기대효과 납세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성실신고 문화 확산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9조 개정)

06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

종 전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 제출

- 수출입기업이 수출환급 등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직접 제출

달라지는 내용

-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간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간소화
- 세관 담당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동 확인

기존



개선



< 사례 >

개정전	· A사는 수출환급 등 중소기업 우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세관 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급(유효기간 1년)
개정후	·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관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A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함

기대효과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하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연동으로 증명서의 신뢰도 확보

시행일 '26. 4월 시행 예정

07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종 전

□ 부호의 관리

- [신청유형] 신규, 변경(정보, 부호), 사용정지
- [유효기간] 없음

달라지는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 미갱신 시 처리사항 신설
- [신청유형] 신규, 변경(정보, 부호), 사용정지, 갱신, 해지
- [유효기간] 1년



수입자 정보 현행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례 >

개정전	· A는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제한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가능
개정후	·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하면서 자신의 발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현행화하게 됨

기대효과 수입자 정보 현행화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

시행일 '26. 1. 1. 시행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16조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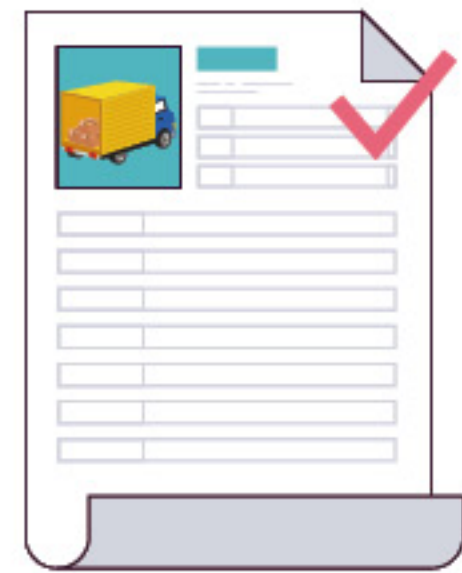
08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종 전

- 보세운송시 운송수단
 - 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위반시 과태료)
 - *운송수단 미신고시 처벌 불가

달라지는 내용

- 운송수단 신고의무 신설
 -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위반시 과태료)



운송수단 신고 필수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였으나, 운송수단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아니함
개정후	· B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차량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

기대효과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차량) 신고의무를 명확히하여 밀수출입 등 통관질서 교란행위 방지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법」제216조 개정)

09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

종 전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제19조)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 제공

달라지는 내용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 개선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삭제>



구매시 수입물품의 관세를 함께 결제



부족세액 발생



구매대행업자가
잘 못 납부된 관세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짐

< 사례 >

개정전	· 화주로부터 관세 등을 수령한 구매대행업자 A는 해외 판매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제공하여 저가신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함
개정후	· 구매대행업자A가 관세 등을 화주로부터 미리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A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함

기대효과 불법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부당하게 관세 등 부족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

시행일 '26. 1. 1. 시행(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개정)